

## 1. 개정이유

- 국내 일부 비행장에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우리부 고시에 따라 설치할 경우 주변 지반 환경 등의 여건으로 성능을 만족하는 위치에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ICAO) 부속서10의 표준 및 권고수준으로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02.05.)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 중 정밀접근레이더(PAR) 설치위치 기준 조정([별표] 제2장 5. 나. 3))
  - 활주로 밖 특정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특정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성능 확보가 되는 위치에 설치 가능토록 개정
-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2021.02.05.) 제7조에 따라 법령 위한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만료일(2022.12.08)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항시설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일부 개정령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 첨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재검토기한)-----<br>-----<br>-----2023년 1월 1일<br>-----<br>-----                                                                                 |
| <b>[별표]</b>                                                                                                                                     | <b>[별표]</b>                                                                                                                                     |
| 제2장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세부 기술기준<br>1~4. (생략)                                                                                                              | 제2장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세부 기술기준<br>1~4. (현행과 같음)                                                                                                          |
| 5.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br><br>가. (생략)                                                                                             | 5.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br><br>가. (현행과 같음)                                                                                         |
| 나. 설치기준<br><br>1)~2) (생략)                                                                                                                       | 나. 설치기준<br><br>1)~2) (현행과 같음)                                                                                                                   |
| 3) 정밀접근레이더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정밀접근레이더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가) 정밀접근레이더(PAR)는 접지점에서 활주로 종단 방향으로 150m (500피트) 지점을 중심으로, 활주로 중심선상 좌우 ±5도 방위의 구역과 수직각도 -1도에서 +6도까지의 구역에서 완전한 통달범위가 제공이 가능하도록 위치가 선정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 가) 정밀접근레이더(PAR)는 접지점에서 활주로 종단 방향으로 150m (500피트) 지점을 중심으로, 활주로 중심선상 좌우 ±5도 방위의 구역과 수직각도 -1도에서 +6도까지의 구역에서 완전한 통달범위가 제공이 가능하도록 위치가 선정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
| <u>이러한 통달범위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u>                                                                                                     | <삭제>                                                                                                                                            |
| (1) 활주로 중심선 양쪽 ±10도에 걸쳐 주사(scan)되도록 장비가 정열                                                                                                      | <삭제>                                                                                                                                            |

되었을 경우 접지점에서 활주로 종단 방향으로 915m(3,000피트)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에서 120m(400피트) 지점에 장비를 위치시켜야 하며, 접지점에서 활주로 종단 방향으로 1,200m(4,000피트)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에서 185m(600피트) 지점에 장비를 위치시켜야 한다.

(2)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활주로 중심선의 한쪽은 15도, 다른 한쪽은 5도로 주사(scan)되도록 장비가 정렬되었을 경우 접지점에서 활주로 종단 방향으로 685m(2,250피트)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에서 120m(400피트) 지점에 장비를 위치시켜야 하며, 접지점에서 활주로 종단 방향으로 915m(3,000피트)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는 활주로 중심선에서 185m(600피트) 지점에 장비를 위치시켜야 한다.

<삭제>